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5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전현희 · 민병덕 · 김한규
문진석 · 강준현 · 김용만
박홍배 · 장종태 · 조계원
김문수 · 김현정 · 박상혁
박선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관련 고충민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검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검찰로 단순 이송 또는 종결처리해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으로 이들의 수

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 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을 포함하며, 모든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조사·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아울러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담보하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20조, 제42조 및 제91조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로 구성한다.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 관련 분야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 관련 분야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 관련 분야
4.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
5. 수사·감사 관련 분야

제4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요구

④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에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42조제6항에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91조제2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2항까지의”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제공기관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 기관, <u>지방자치단체</u> ,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 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 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 ----- <u>지방자치단체</u> , 「감사 원법」에 따른 감사원----- ----- ----- ----- -----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20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20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로 구성한다.
	1. <u>행정·교육·문화·복지·노 동·교통·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 관련 분야</u>
	2. <u>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 관련 분야</u>
	3. <u>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u>

② · ③ (생략)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신설>

건설 관련 분야

4. 국방 · 병무 · 보훈 관련 분야

5. 수사 · 감사 관련 분야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
사법정보의 제공요구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형사
사법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
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
회에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
기 위하여 사용방법 · 사용부서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

<신 설>

<신 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
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
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
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
회가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
니하거나 제6항을 위반하는 경
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42조제6항에 위반하여 형
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한 자

제9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제공기관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삭 제>

<u>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u> <u>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u> <u>부한 공공기관의 장</u>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의</u> 규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가 부과·징수한다.	④ -----<u>제2항까지의</u>----- ----- ----- -----.
--	---